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07호

- 2026년도 제14회 -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736호, 2026. 6. 2.)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2026. 6. 30.)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 규칙 제4230호, 2026. 7. 8.)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8개 분야 8명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등급	선발예정	비 고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노무관리	버스운영과	일반임기제 행정 7급	1명	의원면직 ('26.10.30.)
구내식당 조리업무	총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28시간)	1명	당연퇴직 ('26.12.18.)
수산연구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임기제 해양수산 7급	1명	임기만료 ('26.12.20.)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과	일반임기제 행정 7급	1명	임기만료 ('26.12.20.)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임기만료 ('27.01.09.)
교육기획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일반임기제 행정 6급	1명	임기만료 ('27.01.17.)
공정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일반임기제 공업(화공) 7급	1명	신규채용
공정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일반임기제 공업(화공) 7급	1명	신규채용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노무관리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리(편성, 교부, 재정분석) ○ 시내버스 노사 단체협상 지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업체) 서비스 평가 ○ 인건비 실비 정산 검증(노무 관리) ○ 업체협의회 지도·감독
구내식당 조리업무	○ 직원식당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업무 ○ 급식시설 및 설비청소 등 (홀 식탁 정리정돈 포함) ○ 급식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조
수산연구	○ 부산 연안 수산생물 자원조성을 위한 종자 대량생산 ○ 부산 낙동김 품종개량에 관한 업무(고온내성 부산김 품종개발) ○ 낙동강 하구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생태계 모니터링 업무 ○ 순환여과시스템(RAS) 활용한 종자생산기술 및 현장적용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 방사능방재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10개 자치구·군) ○ 시 통합방사능 감시시스템 확대 구축·운영(훈련포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따른 방사능 감시·분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 ○ 과학적 주민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수출형 연구로 관련 대응 및 현장 모니터링 ○ 방사능방재·방사능 분석 R&D, 연구용역 발굴 및 추진 등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 피해신고 접수 및 관계자 구술기록, 증거자료 수집·정리(조례 제4조) ○ 피해자 면담기록과 인명자료 대조·정리 등 기록물 DB화 ○ 복지지원사업 발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조례 제5조) ○ 구·군,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등
교육기획	○ 인재개발원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관리 ○ 신규 혁신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설계·운영 ○ 선진 교육사례 벤치마킹, 대외협력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 ○ 기타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공정안전관리	○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및 이행 실태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법적 의무 이행 관리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역·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 (상한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정치자금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나. 분야별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노무관리	일반임기제 행정 7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학과 : 회계학, 경영학, 법학 등) - 운수업 관련 운송원가 산정, 노무관리 직무 유경험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구내식당 조리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8시간)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인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기사, 기능장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관 또는 단체,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조리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관 또는 단체, 기업체 등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조리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산연구	해양수산 7급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수산생물, 수산양식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행정 7급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 방사능 탐지와 측정 등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원자력(핵)공학, 원자력시스템공학, (핵)물리학 등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 * 명시되지 않은 유사학과는 학과장 증빙을 첨부하여 인정 가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사회복지 관련 분야(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복지시설(복지관 등) 근무 경력자
교육기획	일반임기제 행정 6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기획 등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등 교육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공정안전관리	일반임기제 공업(화공) 7급	**※ 다음【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격요건】** 1.「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 **(민간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1, 2번 경력요건은 민간경력만 해당되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합산하지 않음)**
* **(공무원경력)** 3. 0급 또는 0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방　　법 :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아래 ***적극적 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이 경우 서류전형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자 적의 판단하에 접수기간 내 기타서류 제출　***적극적 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기준	일반 전형요소			전문분야별 전형요소					
	소계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소계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능력도	직무분야 전공관련	직무관련 연구이력 및 업무성과물	직무관련 포상 등 기타실적
100	30	15	15	70	30	15	15	5	5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방　　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

○ 평정요소 및 평가방식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 5개 평정 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다수인 경우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임용 인원수만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평정결과 동점자 발생의 경우('상'의 개수 동일),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6. 보수 수준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9,663 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6급(상당)	86,606 천원	57,708 천원	
7급(상당)	70,782 천원	50,272 천원	
8급(상당)	62,096 천원	44,296 천원	
9급(상당)	54,678 천원	-	

※ 상기 보수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액임(시간선택제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1. 10.(화)	11. 18.(수) ~ 11. 20.(금)	**서류전형**	12. 2.(수) ~ 12. 3.(목)	부산광역시청	12. 4.(금) (예정)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시험일시, 장소 등)
		면접시험	12. 10.(목) ~ 12. 16.(수) **※ 임용점검위원회 (합격자 결정 전)**	부산광역시청	12. 24.(목) 이내

※ 시험일, 면접 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시 홈페이지 게시(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

나. 접 수 처 :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10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11:30 ~ 12:3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함께 우송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통상환증서 상 '받을분' 란에 기재하지 않음

라. 응시표(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 전자메일로 통보 예정(전자메일이 없는 경우 휴대폰 SMS 통보)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붙임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목록별 작성요령 반드시 참조**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 필수제출	○ 각종 제출서류 목록별 구비 여부 및 누락 사항 등 점검(체크)·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필수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 날인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 유의) **※ 응시수수료 : 5급(가급) 10,000원 / 6 ~ 7급(나 ~ 다급) 7,000원 / 8급 ~ 9급(라급 ~ 마급) 5,000원**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필수제출	○ 응시자격 관련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자필 서명 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 필수제출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 필수제출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구 분	내 용
6. 학위증서(졸업 증명서) 1부 : 필수제출	○ 학위별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 학위요건이 필수 자격요건인 분야는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관련학과와 학위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학과증명서(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중 "별지 제8호") 필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7. 경력증명서 1부 : 필수제출	○ 발행기관 관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필수 기재 ○ 근무부서, 직위(급), 담당업무,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문에 기재된 일정상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강사,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해외 경력은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행기관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확인(서명 필수) 또는 '붙임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중 별지 '참고. 경력증명서' 서식 활용**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필수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상 모든 경력기간에 대한 검토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보험 가입 전체기간'으로 발급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기간의 산출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입금명세서, 보수내역,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9.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6호·제7호) : 필수제출	○ 자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7호)
10. 증명사진 1매 : 필수제출	○ 추후 시험 시 본인 확인용이며, 규격 무관
11. 자격증 등	○ 경력 외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필수 제출 **※ 자격증이 필수 자격요건인 분야의 경우, 해당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지원 분야 기타 근무실적, 업무성과물 및 특이사항

- ▸필요시 전체 실적 등을 정리한 요약본 제출(A4 3매 이내(자유서식))
- ▸근무실적(성과물 등)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자료제출은 **5점 이내로 한정**

②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 등 실적 자료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자유서식)하고, 논문 표지 및 서론 사본(10페이지 이내) 제출**

④ 각종 대회 수상·상훈 및 포상·표창 등 증빙자료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학위 기준(필수요건)으로 채용하는 분야에서, 응시자가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필수 제출**

다.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필수서류)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단, 어학 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접수(우편도착) 익일까지로 한정하며, 접수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절대 불가)

※ 증명서 발급 기한 초과할 경우, 해당 증명서 경력 인정 불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학위,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미제출시 인정 불가) **※ 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 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합격자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시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문의 연락처

- 응시 관련 :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1-888-1975)
- 직무 관련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연 락 처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노무관리	버스운영과	051-888-3962
구내식당 조리업무	총무과	051-888-1923
수산연구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22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과	051-888-3012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자치행정과	051-888-6467
교육기획	인재개발원	051-366-7512
공정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224

붙임 1. 임용시험 공고문(안) 1부.
2. 직무기술서 각 1부.
3.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끝.